

참여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20. 5. 25.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11대 분야 70개 과제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21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6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8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10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12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1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5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16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18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2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21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22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4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25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6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7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9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3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32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33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34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36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37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39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41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43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45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47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49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50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2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5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54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56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58
[국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60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62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64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66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68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70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71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72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7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7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77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78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8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82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84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86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89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91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94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96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98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99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01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103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105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106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07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108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109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110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111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113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116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119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121
위험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122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24

생명 and 민생을 살리는 21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권력의 교체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갈 국회의 역할에 대해 기대했지만, 정쟁으로 뒤덮인 4년을 경험한 국민들이 새로운 국회지형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의사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더이상 야당 탓만 하지말고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입니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입니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과제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여·야 정당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과제는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11대 분야 70개 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1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장의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실업부조 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유급병가휴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셋째,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장 시행해야 할 법 개정을 미루거나, 1호 법안이라 발표하고도 정작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 행태가 21대 국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개혁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괄하는 「의회윤리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상시적인 국회운영과 가장 중요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하는 등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입법과 함께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행정부를 감시하듯,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시기 국회는 선거가 끝나면 들어가 성벽을 세우는 자기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실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제공을 요구하지만, 정작 국회 사무처는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당, 인력지원 등 국회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심사 절차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과 회의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가 출발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는 국회의원이라는 대표를 선출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21대 국회에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5. 25.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임.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드러냄.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는 병상당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함(OECD 보건의료통계,2019).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에 쏠려있는 상황임.
- 더욱이 공공의과대학이 없고, 공공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수는 매우 부족함. 이처럼 의료인력수를 확충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인력과 공공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 권역별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점검해야 함.

2) 공공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함.

3)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예산 지원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 씬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행동수칙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28.6%)가 꼽혔고, 응답자들은 휴가 보장은 물론 쉬었을 때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음.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 관련 소득보전제도를 갖추어야 함.
-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상병수당을 들 수 있음.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음.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음.
-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함.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병수당 시행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정부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함.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가 요구해야 함.

2) 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전통적인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고용보험이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해야 함.
- 현행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한해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2018년 기준 13.1%, 고용노동부).

2. 세부 과제

1)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해야 함.

2)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일수 연장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라는 요건을 완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함.
-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같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 주에서 수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함.

3)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음.
- 20대 국회에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기간의 측면에서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 개정이 요구됨.

2. 세부 과제

1) 지급대상의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으로 설정되어 있음(2022년 60%).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으로 소득 지원 대상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2) 지급액수의 상향

- 1인 가구 생계급여보다 낮은 구직촉진수당의 급여수준(51만 원)을 월 평균임금 20~25%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양가구원(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추가보충수당을 지급하는 해외의 실업부조제도의 방식을 적극 차용할 필요가 있음.

3) 지급기간의 확대

- 지원기간을 최소 1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하도록 함. 적절한 지급기간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음.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확대 방식은 예상과 다르게 영세한 공급기관의 증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과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는 확대될 수 밖에 없음. 서비스 질 하락, 노동자 처우 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였고, 2019년부터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

2. 세부 과제

- 1) 보육·노인·장애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설립주체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등을 포함한 근거 법을 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1.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2월 17일 이후 7주간, 13개 업종의 서울시내 카드 매출 1조 6,600억원, 매출 1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요식·유흥업(6,517억원), 유통(2,462억원), 교육·학원(2,416억원) 등의 피해가 컸음. 가맹점주협의회 조사 결과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4분의 1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했음.
-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어 후, 세계 각국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음.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간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최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 중이며, 독일·덴마크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기도 함.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의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한계가 있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3만여 점포가 혜택을 입는데 그쳤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납부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보유재산 500만원 이하의 한정된 대상만을 지원하고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 대상자인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전국 13만 3천호 수준인 상황임.
- 영국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전부에서 신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이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민간임대 영역에서의 코로나19 대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2. 세부 과제

- 1) 상가 임대료 연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한시법 시행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의 한시적 특례 조항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긴급구제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ex. 유럽의 경우 최대 6개월 또는 2020년 9월 말까지)는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을 금지하고 임대료 납부를 유예함.
- 2) 임대료를 연체한 주거세입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한시법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의 한시적 특례조항을 도입하거나 별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긴급구제법」을 제정하여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함.
- 3)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상가·주거 임대료를 동결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
 -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매출 및 소득에 타격을 입은 상가와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후 6개월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0%로 동결하는 한시법을 시행하고, 상가와 주택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며, 신규 퇴거소송의 개시를 중단함.
-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인정 사유 완화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거 및 상가세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임감액청구가 인정되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실물 경제의 위축, 각국 항공기 및 물류 운송의 중단,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각 산업에 대한 경제안정화 조치들을 실시함. 한국 정부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 해운,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
- 그러나 5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에서는 6개월 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경영진의 배당·자사주 취득 등 금지, 기업 정상화 후 이익 공유 등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처리된 법안은 출자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주주 경영권 보장에는 충실한 반면, 고용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
- 실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청소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기한 무급휴직·강제연차에 내몰리거나 이를 거부하면 해고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원대상이 적절하고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후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 및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회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 1) 「산업은행법」 추가 개정을 통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성 및 고용총량 유지 조건 강화
 - 자금지원의 요건, 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제29조의5 원래 개정안에 명시되었던 고용유지 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경영성과 공유 등 내용은 복원하고 제29조의4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기존 주주 및 지분권장에 대한 우선매수기회 보장 등의 내용은 원안처럼 아예 삭제하거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절차 및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해야함.
- 2)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지원조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

- 실제 이행과정에서 경영진 및 대주주의 책임성과 자구노력이 제대로 제출 및 이행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유지 조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함. 특히 특정 기업보다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취지가 있는 만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고용유지 노력과 원청의 책임이 수반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후점검 이행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비교를 달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을 계산하더라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함.
- 정부가 2018년 말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부 인상했음에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승하는 등 불안한 상태가 드러난 바 있음. 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율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2. 세부과제

- 1) 21대 국회 임기 중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GDP대비)으로 강화
 - 2주택과 3주택의 구별 없이 각 구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
 - 부동산 보유세율을 1%로 상향하는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입법화 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65.5%, 표준지 53.6%, 공동주택 69.0%로 낮은 수준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본래의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또 행정부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 표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 체제를 왜곡하는 것임.

2. 세부과제

- 1)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점검, 공시가격을 시세에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
- 2)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세금이 책정되고 있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시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혜택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해주고 있음.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임.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그에 상응한 보유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양도소득세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조세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은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자는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게 됨.
- 현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10%, 3주택 이상 2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임. 3주택 이상에 대해 상당한 세후 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임. 통계상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비과세 제도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 매매 이력이 단절되고 과세 자료 축적이 어려워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비과세의 기준이 ‘양도차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임.

2. 세부과제

-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 2) 「소득세법」 개정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하고, 기본공제 금액 폐지
 - 2천만 원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 축소
 -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 30% 수준으로 축소, 400만 원 기본공제 금액 폐지
-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 종합 과세 기준 금액 1,000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축소하거나 폐지
- 4)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5)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4%, 1년 마다 공제 비율 8%씩 올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 80%를 공제하는 비율 축소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세수 대비 OECD 평균 24.3%에 비해 우리나라는 17.6%밖에 되지 않으며,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이지만, 우리나라는 4.3%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처럼 납부 수준이 낮은 이유는 낮은 실효세율과 각종 공제제도로 상속세를 실제 납부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임. 한국과 같이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경우, 상속세를 제대로 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일부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지속하였음.

2. 세부과제

1) 상속세 공제액 축소

-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공제액을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제도 범위 축소, 공제 요건 강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의 사전검증 및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여 정함.
-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승계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종교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종교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세목에 따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남.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까지 70%를 공제하는 반면 종교인소득 필요경비공제는 2,000만 원까지 80%까지 공제하고 있음.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문제가 있음.

2. 세부과제

1)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 신고납부 제도 폐지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남.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음.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만 도입되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된 바 있음.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세부과제

- 1)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
 -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소송에 승소한 경우 배상의 일부를 원고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89년 단일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결국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 20%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 지명 8명, 공급자(의료계) 지명 8명, 정부·공익 지명 8명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입자(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8명이나, 사용자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위원은 소수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건강보험 한시적 국고지원 폐지와 20% 국고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을 삭제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함.
- 2) 가입자 중심의 검정심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보험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확대 등 구성을 개편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하반기부터 법안이 적용될 예정임. 통과된 법안은 기업이 개인의 의료기록·유전자 정보·건강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내용임.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가 보안 장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의료영리화 가속화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보건·의료 정보를 가명처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였을 경우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정보를 공익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및 사회정책적 통계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해당 연구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 이후 폐기 등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가 제한없이 이용될 수 있음.
-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정보 누설금지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금지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보건·의료 정보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개인의 동의 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이용 후 폐기조항을 추가해 보건·의료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급여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급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총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기준, 약 720조 원 이상의 규모로 GDP대비 약 37%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임.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집중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여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부양부담 완화 등)과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하락을 45%에서 멈추고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

2) 기초연금 인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함.

3) 국민연금기금 사회적책임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일 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하여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음.
-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함. 그러나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을 뿐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건에 대해,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정결제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12월,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분·처벌 규정을 명시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관리를 시장에만 맡기고 공공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임.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유치원 회계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모아져 2020년 1월,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이뤄내었음. 이제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 1)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 방안 명시
- 어린이집 지원금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 등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의 대략 20%는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휴업수당 지급,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 이해대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상시적인 대량해고가 남용되고 있음. 정부가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움.

2. 세부 과제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전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되,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업수당, 해고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함. 또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노동자 이해대변 제도 실질화

- 근로자대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조항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불이익취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신설해야 함.
- 현재 30인인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야 함.

3)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

-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은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19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2017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은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은 없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2. 세부 과제

-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관련 법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 2)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화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를 위해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임.
-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함.

2. 세부 과제

1)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을 폐지해야 함.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하는 지연이자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에 벌칙조항을 도입해야 함.
- 사업주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도입해야 함.

2)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폐지하고, △소액체당금(가동중인 사업장 대상)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야 함.
-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법」은 기업 수준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나, 단체교섭권 행사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제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개별 교섭 여부를 결정하면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법이 규정한 전형적인 노동자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노동조합의 노동권 행사를 제약 당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ILO 기본협약 비준

-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함.
- 기본 협약 이행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재직자인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직급·직무로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를 개정함.

2) 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개념 또한 확대해 실제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해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의무화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사용자에게 개별교섭 선택권을 주는 조항을 폐지함.
- 손해배상·가압류로 파업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정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감경, 노동자의 급여 등 생존에 필요한 재산에는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세부 과제

- 1)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
 -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특히, 정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2) 재벌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 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함.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스투어드십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실질적 효과가 미약함.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시급함에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음. 20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 여·야 의원 122명이 참여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후 특별한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됨.

2. 세부 과제

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

-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거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임.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주주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2) 소수주주의 권한을 높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 현행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3)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감사위원 분리 선출, 노동이사제 도입

-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에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결격 요건을 강화함.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확보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전체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노동자의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만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영리법인 중 0.2%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이익 분배의 불균등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대기업 대비 63% 수준에 불과함.
- 하도급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사회의 주축 산업 부문이던 제조업 분야의 전속거래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심화시켜왔음.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
- 전속거래구조에 기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단순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경제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소득 감소,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공고히 함. 이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

2. 세부 과제

- 1)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법 제2조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개정)
 - 4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계약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및 건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문화·예술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회사가 제조 등을 다른 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하는 기업을 원사업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등 적용을 배제해야 함.

- 2)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제3조 개정)
 - 계약서면에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거래 물품 등 종류와 상세내용, 표준품셈·단가·각종지수,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 기재해 교부하도록 함.

- 3)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 등 중소·하청기업의 교섭권 강화(제28조 제2항 신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4)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공정 감독 행정력 확보(제3조의4 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의4, 제26조, 제32조 등 개정)
 - 전속적 하도급 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함.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방적인 위탁 중지 및 하도급대금 일률 감액 행위, 원가 이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 금지
 -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하거나 부당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법 위반에 대해 상담이나 법률자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조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상습적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함.

- 5) 불공정 행위에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강화(제4조제3항 신설, 제18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7조)
 - 부당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하도급법 위반 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해야 함.
 -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함.
 -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하도급 계약의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함.

3.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2005년~20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조 3천억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2012년~2017년까지는 매출액이 22조 6천억원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 특히 최근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세부 과제

- 1)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전반의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상인들의 육성·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음.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유통점과의 상생은 물론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함.
- 2)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 확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는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야 함.

3)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3.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분야의 매출 규모는 약 133조원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이 매년 한 자릿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다 2019년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매년 10%대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2018년 15.9%, 2019년 14.2%).
-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배달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시장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가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기업, 배달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와 2·3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 논란, 쿠팡맨이나 배달노동자 등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 등 온라인 분야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2. 세부 과제

- 1)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온라인 계약관계 규제
 - 현재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납품업체 및 중소기업), 배달노동자와의 다면적 계약관계에 대한 입법으로 보완해야 함.
- 2) 온라인 불공정 행위 유형 명시
 -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 운송사업자, 배달노동자 간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계약거절, 계약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행위 금지와 검색 및 노출 순위 관련 정보 사전제공 등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함.
- 3)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기업, 배달노동자 상생협약구조 입법화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약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적으로 본사의 의지에 달려있고,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대리점 거래의 경우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가맹점·대리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 현행 법이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야 함.

2) 지자체 조사권 및 처분권 공유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 전체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함.
- 3) 대리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도입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3.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 기간은 3.4년에 그치는 반면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은 10.7년으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은 매우 낮음. 가구당 평균 이사 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지 않고 있음. 5%의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도 계약기간 내로 한정되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짐.
- 정부는 우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도하고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세금절감·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작 세입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는 상황임.

2. 세부 과제

1)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제6조 개정)

- 고의적인 주택 파손, 장기간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이 필요함.

2) 전월세상한제 도입(제7조 개정)

- 계약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시까지 확대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3) 표준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신설)

-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준으로 삼음.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제공되는 반면, 재건축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전 및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음.
- 이로 인해 거주 공간을 상실한 세입자들과 조합간에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큰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2009년 4월,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최대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2항(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이 삭제되어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크게 줄어들음.

2. 세부 과제

- 1)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신설)
 - 개발 이익 환수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시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해야 함.
- 2) 재건축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신설)
 - 재건축 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사업에 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기조에 따라 20%이던 선택약정할인이 25%로 확대되면서 2019년 통신비는 12만 3000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2019년 가계동향조사’). 하지만 2019년 4월,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3만 3천원이던 최저요금제 구간이 5만 5천원대, 최대요금제 구간이 13만 5천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LTE요금제에서도 제기되었던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단가가 14배나 차이 나고 실제 사용하기에 턱 없이 낮은 데이터 제공량 등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함. 2, 3만원 가량의 보편요금제 출시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함.
- 「단통법」은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만들고자 2014년에 추진되었으나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고, 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비싸게 사는 법’이 되었음. 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도 급증해 출고가 200만원 이상인 단말기도 다수임. 하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존재해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2. 세부 과제

1)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함.

2)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인가제 수준으로 ‘유보신고제’ 보완·강화

- 20대 국회 막판에 폐지된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유보신고제’로 약화되었음.
- 요금인가제의 경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요금의 적정성,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검토·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유보신고제’는 문제가 있을 경우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신고된 요금제에 대한 검토, 반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3)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 이동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 망구축이 완료된 2G, 3G,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료를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함.

4)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

-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해야함.

3.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OECD 교육지표 2019).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을 두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 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B학점, 소득 1~3분위 학생은 2회에 한해 C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 하는 것 역시 반값등록금 취지에 반함.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성적기준(B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학원 재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이 불가함.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예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위원은 전체위원 중 10분의 3에 불과함. 또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2. 세부 과제

- 1)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폐지
 -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질적 반값등록금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 확대

- 현 2.0%인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에서 제외해야 함.
- 3)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대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으로 결정.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등록금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함.
 -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각 학교 내규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함.

3. 소관 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84%로 OECD 평균 128%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는 달리 사회안전망 구축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가계신용 증가율은 매년 경제성장율을 상회해왔으며, 그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도 증가해 2019년 4/4분기까지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위기로 인해 다수의 채무자가 한계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연 24%), 「대부업법」 또한 개인 및 소기업 대부의 경우 이자율을 연 27.9%를 넘지 않도록 상한(대통령령에 연 24% 상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국들의 최고이자율 상한은 연 20% 아래에서 결정되고 있음.
- 매년 6~8만 명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고, 개인회생 변제 시작 후 탈락율이 약 30%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 맞춰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 수많은 채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법」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 1) 최고 이자제한을 제한 및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이자제한법」 제2조, 제7조 및 「대부업법」 제8조 개정)
-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법안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함.

-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 방지함.
- 2)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개정, 제12조의4호 개정)
-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의 채권으로 적용범위를 넓혀야 함.
 - 현행 변호사로 한정된 채무자대리인의 자격범위를 채무상담, 조정, 불법추심 근절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함.
 - 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추심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함.
- 3)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및 채무자 구제 강화(「채무자 회생법」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 등 신설, 제564조, 제624조 등 개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익이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하고,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 신설함.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 중지
- 4) 호의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보호법」 개정(제4조의2 신설)
- 호의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로 규정함.
- 5)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 정책 완비(신규 법률 제정)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약탈적 대출 및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함.
 - 원금 일시상환이 아닌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 총액을 정기 분할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의무화 규정 도입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6)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의원의 경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조차되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셀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모든 공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이외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국회의원윤리규범이 있으나 규범에 불과함.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괄하는 「의회윤리법(가칭)」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1)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회윤리법(가칭)」 제정
 -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과 의무,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함.
- 2)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 도입
 - 「의회윤리법」 위반자에 대해 국민 일정 수(예 : 1만명)가 윤리심사를 청구하면, 윤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3) 국회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13인 내외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보장하여 독립성 강화 (위원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두고 있는 감사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참조), 회의 공개
 - 상설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대외공표권, 연차보고서 공개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 부여해야 함.
 - 윤리위원회는 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함.
- 4)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 직무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제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록·공개제도, 이해충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5) 국회의원 보수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을 ‘보수’로 일원화하고, 혼재된 규정들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폐합함. 수당 항목 중 일반수당을 기본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 등의 항목을 삭제해 기본 봉급에 포함, 100% 과세해야 함.
- 영국의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와 같은 국회의원의 봉급, 연금, 사업비(보좌진 월급 등)를 책정하고 회계감사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개원협상과 관련 정당 간 정쟁과 특정 사안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거나 중단되는 등 20대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특히 많았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 국회는 국민의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 국회의 주요한 행정부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조사, 인사청문회 등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산 및 결산심사는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매년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통상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빌미로 타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월권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쟁점 법안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법안 심사의 ‘병목’이 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상시적인 국회운영

- 임시회/정기회 개최 유무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가동해야 함.

2) 소소위 폐지, 쪽지예산근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혁

-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변경, 예산결산특위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소관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간 겹침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 매 회의 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함.
-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제한,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관행을 근절해야 함.

3) 체계자구심사 기능 이관 등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해야 함.

4)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폐지

-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 제도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고유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험적인 문제가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국민에게 열린 국회 위한 「국회법」 및 관계 규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청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방안도 미흡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괴리된 채 존재하고 있음.
- 전자청원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문턱이 높아(30일 내에 10만 명 실명 인증 서명)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상 국민들은 각종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을 경우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회의 방청 시, 반드시 소개의원을 통해 방청하도록 해 국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국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국회는 회기 경과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국회 지원조직별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지원조직 중 하나인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당, 인력지원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음.

2. 세부 과제

1)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청원심사 절차 실질화

- 현재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요건인 ‘30일 간 10만 명 서명’을 ‘90일 간 5만 명’으로 완화,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하도록 함.
- 「국회법」과 「청원법」상 청원 심사기한은 90일로, 처리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도록 함. 반면, 「국회법」은 연장된 60일 후에도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기한없이 추가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청원 심사의 국회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국회법」과 「청원법」의 청원 심사기한을 일치시킴.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되도록 함.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해야 함.

2)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출입 및 회의공개

- 국회의사당 정문 등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 사유를 예외 규정으로 함.
-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각종 회의 방청 시 필요한 허가사항 삭제(소개의원 제도 폐지), 방청 신고만으로 방청 가능하게 해야 함.
- 소위원회 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공개함.

3) 회의 결석 국회의원 공개 의무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공개 확대

- 출석, 청가위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개정해 결석위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해, 의정활동의 기본인 출결 현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국회 홈페이지는 국회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으로, 현재 국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시민친화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함.
- 파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를 모아 국회 회의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연차보고서와 국회 운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운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줄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하게 비례대표전담 위장정당 창당을 공언한 것은 물론 2월,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함.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공천결과가 애초 자신들의 뜻과 다르자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바꾸고 공천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함.
-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정당 및 군소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하고 공천을 완료함. 비례연합정당은 거대 정당이 직접 위장정당을 창당한 것은 아니나, 자당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신생정당을 들러리세워 비례대표의석수 극대화를 위해 급조하고 총선 후 해산을 전제로하고 있어 위성정당에 해당함.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였음.
- 위장·위성정당은 독자적인 정책이 없고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헌법 제8조가 규정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임. 그 결과,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나선 21대 총선은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강화로 나타남.
-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장·위성정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재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음.
- 선거시기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0조와 93조를 개정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완전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지역구 후보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전부 연동하는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2)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1항을 폐지해야 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해야 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앞당겨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함.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해야 함.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정권 확대와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는 물론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20대 국회는 국회가 임명해야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을 임명하지 않았음. 또한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해야하나,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은 21대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선거시기마다 각 정당들은 여성 공천 의무화를 약속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은 단 한 정당에 불과했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법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근거없이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규정해 헌법이 명시한 공무담임권을 훼손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조정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2)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3)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을 개정해 피선거권 연령과 선거권 연령(만18세)을 일치시킴.
 - 4) 여성후보 추천 정치할당 제도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해야 함.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도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해야 함.
 - 5)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함.
 - 6)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로, 정치자금의 대원칙인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 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기초 지방의원 후보자 등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2)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함.

3)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등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

- 현행 300만원인 공개되는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함.
- 연간 12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함.
- 선관위에 보고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수입지출 포함)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하여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 시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풀뿌리 민주정치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정당설립 규제 조항을 완화해야 함.
- 또한, 「정당법」은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 보장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설립 요건을 삭제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 해야 함.

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축소를 위한 개혁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미완임. 독립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독립적인 공수처장 추천, 조직과 예산 편성 감독 등이 필수 과제임.
-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가 여전히 대통령령에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도 중첩될 수 있음. 또한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완화는 시행유예기간이 4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어 조속한 이행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려한 처장 추천과 인선 및 조직 구성 감독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추천
- 처장 후보의 정책 역량과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 진행
- 청와대와 검찰 등 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 구성 및 실효적인 예산 편성 감독

2) 검찰권한 분산 및 축소, 검찰개혁 방안 법제화

- 개정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의 범위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같이 범위가 불분명하며 임의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명확하게 개정해야 함.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조기에 이행해야 함.(4년 유예조항 삭제)
-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요건 제한 등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된 검찰개혁 방안과 주요 사건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를 「검찰청법」 등 법률에 명시하여 역진되지 않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어,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개혁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후 자치분과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의결(2018년 11월)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추진방안을 발표함(2019년 2월). 이 내용을 담아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9년 3월)함.
-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출된 홍익표 의원안은 국가경찰 조직을 대부분 남겨 둔 채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도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 이러한 자치경찰 방안은 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현재 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정보활동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그런 만큼 정보경찰 폐지는 경찰개혁의 핵심과제임. 그러나 사실상 정부안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안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임.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사찰이라는 폐단을 막기 어려움.

2. 세부 과제

1)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함.

- 국가경찰 사무로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남기고 나머지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설정함.
- 2) 수사청 설치 등 수사의 중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청을 설치함.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함.
- 3)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함.
 -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음에도,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지지부진 함. 대법원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로 8명의 법관들에게 사법농단 가담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했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 정직 6개월에 불과했음. 이후 검찰로부터 비위법관 66명 명단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중 불과 10명만을 징계위에 회부하였고, 이마저도 징계위원회가 1년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음.
- 최근, 성창호·신광렬·조의연·임성근 등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음.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임.
- 20대 국회에서의 탄핵이 지지부진한 사이, 일부 판사들은 퇴직하였고 심지어 대법원은 지난 3월 초 사법농단 사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를 재판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음. 관여 법관들 탄핵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임.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대법원은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2. 세부 과제

- 1) 사법농단 가담 법관 중 현직 법관 탄핵 대상 10인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구대와 사전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하여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법관 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나상훈·문성호·신광렬·임성근·최희준 등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함.

2)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법관 관료화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법원사무처(가칭)’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3년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은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및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와대나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인 만큼, 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의중에 영향받지 않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부적합 후보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가 법무부나 대통령의 ‘거수기’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이며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당연직 및 장관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의 비중을 늘려야 함.

2. 세부과제

- 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제34조 개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도록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 대부분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지만 2020년 현재에도 대법관의 대다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임.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음.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세부과제

- 1) 대법관 다양성 보장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함.
- 2)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5조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해야 함.
-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위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개정
 -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 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야 함.
 - 5)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해야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년 도입 후 5년 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었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세부과제

-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2항 등 개정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제5조 2항 개정).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제9조 1항 2호)을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제5조 1항 개정)
- 2)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따르도록 개정
 - 대법원 판례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법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제46조 5항 개정).
- 3) 법관의 배심원 평의 및 평결 관여 금지
 -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평의 도중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한편, 제46조 3항에 따르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와 견해가 달랐던 배심원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배심원 평의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배심원들의 평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의 과정에 판사가 개입하는 강제 조항(제46조 3항)은 삭제해야 함.

4) 검사의 상소 제한

- 한국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소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배심제를 처음 시작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상소권이 제한되면 검사가 기소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배심원과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2심, 3심까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임.

5) 배심원의 수 관련 5인제 배심원제 폐지

- 배심원단의 규모는 충분한 숫자의 배심원들이 토론하여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비록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는 폐지하고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9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제13조 개정).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2019년 초, 잇따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관련법 제·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0년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입법이 좌절되었고 20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윤리법」과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해야 함.
-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 2016년 2월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또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감시, 미행, 사찰)을 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 가능성이 우려됨.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및 폐지 논의는 전무하였음.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높은 만큼, 21대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함.

2. 세부 과제

- 1)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정원법」 등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제3조 개정)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제3조 1항 5호와 하위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폐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제3조 1항 1호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제3조1항2호 및 하위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정)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 2) 정보감독기구 신설 등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국회법」 및 「국정원법」 개정)
 - 「국정원법」 제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국회법」 제54조의2 개정)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정원법」 제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국회법」 제84조 4항 개정)
- 3) 국정원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전면 폐지

3.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1.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국민발안, 국민제안에 의한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이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다중이 입은 피해의 해결이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나 배심제도 같은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통로와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함.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드는 점 등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임.
- 그동안의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도 존재함.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임.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생명권, 평화권, 망명·난민권, 정보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권리 행사가 좌우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이념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입법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대부분이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되어 왔음.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했으나, 중앙정부의 일원인 입법부에 맡겨둠.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 20대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개헌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됨.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개헌넷 등 시민단체들이 낸 개헌 입법청원안도 폐기됨.

- 2020년에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회복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148명이 동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역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되어 폐기됨.

2. 세부 과제

1)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참여기구 구성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함.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함.

2)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의 21대 임기 내 추진

- 개헌은 첫째,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함. 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함.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함.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셋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함.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넷째,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함.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임.
-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은 촛불혁명의 연장으로서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함.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8년 국회에 청원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참조

3. 소관 상임위 :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 필요)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02-723-0808)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규정에 관하여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하였음. 국회는 현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어야 하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2020년 5월, 경찰청 의견만이 반영된 행안위 대안이 통과되었음.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여전히 집회, 시위를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보는 규제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 법안은 국회, 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방해할 우려’, ‘확산될 우려’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막연히 ‘대규모 집회’라 규정하여 집회 개최 여부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를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시늉만 냈을 뿐 위헌적 요소를 부가한 것임.
-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규정임.
- 문재인 정부 이후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줄어들어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금지, 제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1)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제11조) 개선
 -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해야 함.
 -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축소해야 함.
- 2) 교통 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둔 집회 시위 금지 조항(제12조) 폐지
 - 교통 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함.

-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 준 법안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이용 및 제3자 제공 허용, 서로 다른 기업 간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의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를 제한없이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금융, 교육, 문화 등 일상생활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 개인의 모든 일상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묶여있음.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가명정보의 생성, 처리, 결합, 삭제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되는 한편, 어떻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 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합리적 근거없이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겨두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온전한 일원화도 이뤄지지 않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현재보다 격하시켜 감독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함.
- 즉, ‘개인정보3법’은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와 달리,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리감독기구의 독립성, 일원화가 미흡함. 반드시 재개정해야 할 것임.

2. 세부 과제

- 1)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 여전히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법제간의 중복, 유사 규정 등 통일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8호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정의한 반면, 「신용정보법」 제32조 1항 9의 2호는 ‘과학적 연구’ 대신 ‘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과학적 연구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신용정보법」의 ‘연구’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과학적 연구’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등 통일적 법해석에 반하여 혼란이 가중됨.
 -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개념에 ‘결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화(가명처리)에 관한 동의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적절한 동의권행사를 위한 동의제도 전반을 손봐야 함.
- 2) 명시적 동의없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로 제한
- 명시적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경우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예상 및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 유전자정보 등 민감정보의 가명화(가명처리) 후 활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제한하도록 하고, 이 경우도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함.
- 3)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개인정보영향평가, Privacy by Design/by Default 등), 프로파일링 개념 정의와 법률적 요건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등 신설
- 4)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형식적, 포괄적 동의 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 실질적 보장
- 5) 사후 처벌 강화
- 개인정보 유출, 가명정보 처리의무 위반 과징금 등 법률위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법상 의무 또는 보호책임 위반 시 지정 취소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해 신용정보보호 업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해야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이기도 한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 구성에 포함, 종래 비공무원의 위원장 담임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전체 위원 수가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어 공무원 영향력 지나치게 증가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통신제한조치, 특히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시민사회는 기지국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자료의 제공, 인터넷패킷감청 문제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 옴.
- 기지국수사나 위치추적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확인한 바 있음.
- 주로 초동 수사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통신자료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연관성을 가짐에도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하여 한해 600만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감.
- 감청의 경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2015년 폭로된 국정원의 RCS 해킹, 구)국군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사건이 이를 뒷받침함. 이들 사건은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헌법에 불합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음. 현재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개정이 시급함.

2. 세부 과제

- 1)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총 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제6조 7항 개정)
- 2) 통신자료 수집은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 수집은 요건이 불분명하고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보호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다루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3)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감청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 보충성 요건 등을 부가하도록 함
 - 4)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건 강화(제13조 1항, 2항 등 개정)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그 대상범죄를 엄격히 한정하고,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의 요건 강화해야 함.
 - 5)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은 일반압수수색보다 강화된, 통신감청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통제해야 함.
 - 6) 전기통신의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 대상 범죄 엄격하게 한정, 요건 등 강화(제5조~제9조)
 - 감청의 현행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함.
 - 7) 현행 통지제도 강화 : 통신자료, 통신사실자료, 감청 등의 통지제도는 통지시점, 통지내용, 통지위반 시 제재부과 등의 개선 필요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임.
-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이를 통한 행정 감시 등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음.
- 또한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음. 이는 국가권력,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임.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들인 소송비용은 예산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함.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아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함.

2. 세부 과제

1)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함. 미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등 관련 조항의 개정
- 2) 국가가 국민 상대 소송비용확정청구 제한하도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등이 패소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 내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 3) 정보공개소송 소가 하향 등 소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
- 현재 5,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소가 산정 내지 변호사보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적어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인 소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국회나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시도나 논의는 중단된 상황임. 제17, 18,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혐오세력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음. 정부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 사유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임.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2. 세부과제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성희롱 등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커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 논의를 시작함.
- 그동안 한국 정부는 피소 가능성 0%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더 이상 ISDS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2012년 론스타가 5조 원대 ISDS를 제기한 이래 엘리엇, 메이슨, 게일, 버자야 등 외국 기업과 해외 동포들이 중재를 신청하여 2월 기준, 총 11건이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되었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4조 원을 넘어섰음. 중재청구액에 더해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됨. 2019년 12월,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중재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되어 730억 원을 배상해야 함. ISDS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종 패소가 확정된 다야니 사건 관련 자료마저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 국회는 정부가 체결하는 투자협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함. 특히, ISDS는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국회가 ISDS 폐기를 요구하고 이끌어야 함.

2. 세부 과제

1) ISDS 투명성 보장

- ISD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투명한 공개는 필수임.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투명성 조항이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함.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BIT에서 ISDS를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함.
-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함. (EU 역내국간 BIT의 ISDS는 2019년부터 폐기 절차 진행)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고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상황임.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세부 과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해야 함.

2) 도급 금지 대상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정하여 도급금지를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3)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원래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10월,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임. 그러나 2016년 제기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삼성측의 산재 소송 과정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문제가 되고 이 보고서의 정보공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삼성이 이 작업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산업자원부가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직후인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된 직후 운영석 의원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법률적 근거조항으로 이를 뒷받침하려 하였음.
- 2019년 개정법에 따라 2020년 2월 20일 이후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으면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슴기 살균제의 원료 등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일지라도 공론화하거나 심지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는 등의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음.

2. 세부 과제

1)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 조항 폐기

-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거나 환경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취지에 맞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4조 8호 등은 삭제해야 함.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재평가를 통해 현실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5/13)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검찰과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 내용과 다른 결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인지 및 대응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기록들이 특별히 공개되어야하므로 이를 국회 결의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4항 1호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보호 기간 중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결의로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최소한의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결의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현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현장 조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조사관들도 재택근무 등으로 조사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음.
- 더욱이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국정원이나 해군 정보 등への 접근 제약과 비협조 등으로 조사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어 연말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과제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완수되기 힘든 상황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황임.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인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 전담했던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특조위2015-2016) 정원인 120명 이내여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포함해 두 가지 참사를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2. 세부 과제

- 현재 2020년 12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적정 조사인력을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은 그 범위에 중대안전사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침해 방지, 적절한 지원과 소통에 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어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반영하고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의 명문화
-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안전사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의무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특히 고려해야 하는 재난안전약자를 명시
- 재난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
-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신뢰의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
-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에 과실이 있는 쪽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은 제품의 출시·판매·유통·표시·광고 전반에서 인체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이 영업 이익을 우선해 관련 연구 자료들을 은폐·조작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확인됨.
-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 상당수 연구에서 정부의 인정 질환 외에 전신 질환이 확인되고 있음. 오는 2020년 9월 25일 시행돼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지금과 같이 피해 질환이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되고 환경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너무 더딘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선될 수 없음.
- 최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들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추세이고, 생활화학제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과 평생 지속되는 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 대책이 절실함.

2. 세부 과제

- 폐 질환 일부 등 8가지 질환에 국한된 피해 지원 기준 대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를 넓혀야 함.
- 개정 「피해구제법」 제5조 3호(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를 폐지하고, 생명과 건강상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로 인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하고, 해당 피해가 다른 원인 때문임을 가해기업이 입증토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이 집단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참사의 희생자 기억·추모 공간 조성 및 피해자 지원 재단·전문병원 설립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슴기살균제 참사 관련 2016년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옥시레킷벤키저 법인은 정부의 피해 판정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한해 일방적으로 최종 배상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추진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음.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라면 천문학적 손해 배상액과 징벌적 벌금과 과징금으로 인해 법인 존립 자체가 위협 받았을 것임.
-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섬. 반면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3배의 전보 배상에 국한되거나 그조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로는 기업들이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음.
- 「제조물 책임법」 등에 개별 입법돼 있으나, 이를 징벌적 배상 개념으로 종합해 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 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의 50%를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함.
-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집단소송법」 도입안에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9년 9월 당정 협의로 적용 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가슴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 HUS),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BMW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가해기업들의 책임 회피로부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과 함께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함.

2. 세부 과제

- 증권 분야로만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정보 관리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가해기업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토록 해야 함.
-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피고인 가해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 허가 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불안 심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함.
-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도입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전략 폭격기, 정찰기 등을 한반도 인근에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2. 세부과제

-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 2)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도 폐기되어야 이뤄질 수 있음. 나아가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을 지향해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 간 평균 증가율인 5.3%의 2배에 달함. 이에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음.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290.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임.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며,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예산의 약 1/10 수준임.
- 대부분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WMD 위협 대응(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됨.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등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임. 이미 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해왔음.
-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음. 또한 <국방개혁 2.0>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은 소극적이고,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은 아예 없어 시정이 필요함.
- 한편 한국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이유로 비인도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군축 협약들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국방·외교 분야 정보 비공개는 그동안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왔음. 2019년 국방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1.8%, 외교부는 11.7%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 4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일례로 2019년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밀’을 이유로 내용을 전부 비공개했음.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 등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세부과제

1)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포함한 대북 작전 개념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맹목적인 무기 도입 사업도 중단되어야 함. 이를 반영해 국방예산 중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해야 함.
- 한정된 자원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촉구

-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설치를 촉구해야 함.

3)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4) 상비병력 30~40만 명 감축을 위한 「국방개혁법」 개정

- 상비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함.

5)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가입 촉구

- 남북이 함께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함. 확산탄금지협약에도 조속히 가입하고 비인도무기 생산, 사용, 수출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6) 국방·외교 분야 정보공개 강화

-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맞게 안보 및 외교 관련 비공개 조항을 최소화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되어버린 ‘한미동맹’은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나 해외 파병 압박,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된 유엔사 문제, 미군기지 오염, 사법주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음.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또한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강요하다가 최근 50% 인상안을 제안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 삼아 또다시 압박하고 있음. 더불어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해왔음.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SMA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과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이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1,000억 원대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앞서 201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80곳이

넘는 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세부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와 협정 개선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5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한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이번 협정이 증액, 협정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과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또한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나아가 국회는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함.

3) 오염 기지 정화 책임 요구

-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이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한미 SOFA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분명히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함.
- 또한 한미 SOFA에는 환경 정보 공개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기지오염의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시설 및 구역내 환경오염실태 조사 시 국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함.
- 참고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하여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 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미SOFA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4)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 20년 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희생 사고 당시 가해자는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이었음.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을 포함해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해야 함.
- 2015년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한 사건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보툴리눔, 리신 등을 부산항 제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몰래 반입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한미 SOFA 상 국내 반입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반입을 통제할 수 없음. 우리 국민의 보건권 보장 및 물질 반입 절차,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내 법령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그 외에도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 더불어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항들도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 주체가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 남용 가능성이 큰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임의해고 조항을 삭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체결을 위한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통상조약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안전 보장’이나 외교 관련 등 그외의 조약들의 경우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절차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이후 조약 체결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음. 정부 수립 후 2019년 12월까지 한국이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350건(양자 2,635건, 다자 715건)이며, 그중 2,089건이 90년대 이후 체결되었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체결·비준하는 조약의 수는 2020년 5월 기준 현행 법률의 수(1,507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임. 날이 갈수록 시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매우 필요함.
-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이 바로 그 예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 이를 위한 법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2. 세부과제

1)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조약’을 명칭에 관계 없이 타국, 혹은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함.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매년 조약 체결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 ▷정부에 조약 체결 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약 문안 작성, 협상단 구성 ▷작성된 조약 문안 예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협상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시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

제출 보장 ▷협상 종료 시 결과 국회에 보고 ▷체결·공포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국회에 보고로 함.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약 체결로 인해 국내법, 주요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변경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협상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국회와 정부가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2. 세부과제

-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 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 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2. 세부과제

-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20대 국회에서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을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 2011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원조 투명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단체 ‘Publish What You Fund’에 따르면, 무상원조 시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음.
-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2. 세부과제

1) 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함.

2)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현재 23개 항목에서 국제 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 사업의 기획·발굴·시행·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정보공개율이 매우 낮은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완공평가보고서 등 사업 관련 자료 전문을 공개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참여연대 정책자료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행일 2020. 5. 25.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담당 정세윤 국장, 이선미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